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쟁점 검토

양 재 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사팀장
변호사

I.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2009년 8월 7일 발효된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¹⁾이 지난 11월 14일로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이 기간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도가 뿌리내리느라 진통을 겪는 일종의 적응기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난제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실무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가 그러했다. 법 시행 전, 대부분의 실무진들은 언론사닷컴이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더불어 개정 언론중재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포함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불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공포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²⁾ 시행령에서는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위 규정의 문제점은 이것이 전부 아니었다. 시행령 부칙³⁾에 의하면, 유독 해당 규정의 시행일만 공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로 유보되어 있었다. 유보된 기간 동안,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논란이 있었음은 물론이다.⁴⁾

1) 이하 '언론중재법'.

2) 이하 '신문법'.

3) 이 시행령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당시 실무진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일단, 신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이 유보된 기간, 즉 8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언론사닷컴은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거,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11월 6일부터는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발효됨에 따라 언론사닷컴은 인터넷신문에 해당하게 되며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의 지위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여기서 '자동적으로'를 강조한 이유는 개정 언론중재법 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제2조 제18호)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 이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난 100일 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없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서서히 포털의 ‘표시의무’⁵⁾라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 등 개정 언론중재법 상의 새로운 제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⁶⁾ 또, 예상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이지만 11월 30일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27건의 포털을 상대로 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에서 80% 정도가 피해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포털 관련 조정사건 통계

	조 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 정 성 립	조 정결 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동 의	이 의	계 속					
정 정	59	14	10						31	4
반 론	8							1	7	
추 후	1	1								
손 배	43	3				1		1	26	12
계	111	18	10			1		2	64	16

〈표 2〉 포털 관련 중재사건 통계

	중재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정 정	10	10					
반 론	6	6					
추 후							
손 배							
계	16	16					

보다시피,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되게끔 되어 있다. 언론사닷컴이 개념적으로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인터넷신문으로 되는 순간,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5) 개정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포털사업자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할 의무’를 가리켜 ‘표시의무’라 부르고 있다. 표시의무는 포털의 엄청난 전파력을 통해 잘못된 기사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시의무를 포털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여상원, 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언론사의 책임범위. 언론중재, 통권 112호. 언론중재위원회, 2009, p. 17)
- 6) 현재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들어선 포털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사 제목 하단 또는 본문 하단에 “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본 기사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중임”이라는 문구를 달고 있다. 이것은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1조 제3항 ‘접수담당 부서는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경우 법 제17조의2 제1항에 의거, 해당 기사 제목 바로 밑에 ‘본 기사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심리가 진행 중임’이라는 문구를 기사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다’에 의거한 것으로 본문 하단보다는 제목 하단에 표시를 하는 것이 해당 제도를 둔 입법취지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본다.

물론,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한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 역시 시간이 좀 더 흘러 보다 풍부한 사례들이 축적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며 조정·중재실무 또한 확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실무상 문제되었던 쟁점들은 무엇이었으며 현장에서는 어떻게 정리,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논의는 크게 두 부분, 즉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언론사닷컴”으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 실무상 어떤 점들이 다투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개정 언론중재법에 관한 문헌이나 판례가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본문 중에 다소 주관적인 의견 내지는 주장에 불과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II. 포털의 뉴스서비스 관련 실무상 쟁점

1. 법 개정 사항

지난 2005년 1월 27일 언론중재법이 처음 제정된 이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이 바로 포털의 뉴스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당시 많은 언론들⁷⁾은 포털이 언론행세는 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포털 책임론’을 주장했다.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이러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언론보도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⁸⁾

제2조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당초에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규율할 것인지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개정 언론중재법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신설, 이에 포섭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해야 한다. 그러나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의미

7) 2006년 8월 17일자 한겨레 ‘책임 안지는 포털, 오보정정 섹션 만들라’; 2006년 9월 22일자 KBS 미디어포커스 ‘포털 뉴스, 언론기능 외면 언제까지’; 2006년 9월 22일자 매일경제 ‘신문기사 제목, 포털에선 제멋대로’; 2006년 11월 22일자 한겨레 ‘포털, 언론처럼 오보 책임 져라’

8) 개정 언론중재법 공포 당시 2009. 2. 6자 관보(제169335호, p. 130.)에 기재되어 있는 법 개정의 이유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 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인터넷포털...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해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흔히, IPTV라고 불리는 것으로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파워콤 세 개 업체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뉴스 서비스와 뉴스 검색결과에 대해서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는 것에 대해 일부 포털업체의 반발이 심하다. 결국, 포털의 다양한 뉴스서비스 방식 중 어디까지를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조의2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1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이상의 관련 규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첫째로,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이어야 한다. 둘째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셋째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여기서, 입법자가 첫 번째 요건 외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두 번째 요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중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물론이고, 대다수 인터넷신문들이 자체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다른 언론의 기사를 구매하거나 제휴를 맺어 매개하고 있는 실정이다.¹⁰⁾ 개념적으로는 이들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매체들의 법적 지위가 인터넷신문(혹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인지, 아니면 인터넷뉴스서비스인지 혼란스럽게 된다. 입법자는 두 번째 요건을 둬으로써 해당 매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혼동을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요건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상당수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각 기업체의 홈페이지에서는 홍보의 일환으로 관련 기사들을 스크랩해 놓거나 링크시켜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이러한 홈페이지들마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된다면 입법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요건으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당초 의도했던 대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적용 범위가 포털의 뉴스서비스로 좁혀질 수 있었다.

10) 2009. 11. 2자 빅뉴스 “포털 자체 뉴스, 언론중재 대상 제외 확정”.

2. 쟁점 1 :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과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범위

가. 문제의 제기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버, 파란, 드림위즈, 야후, 구글 등 우리나라 웬만한 포털들은 예외 없이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이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¹¹⁾은 예외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들 포털이 큰 틀에서 개정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점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좀 더 세부적인 데 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 방식은 생각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또한, 각 포털들마다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서 특히,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뉴스서비스와 뉴스 검색결과에 대해서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는 것에 대해 일부 포털업체의 반발이 심하다.¹²⁾ 결국, 포털의 다양한 뉴스서비스 방식 중 어디까지를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볼 것인지 기준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나. 포털 뉴스서비스 방식의 다양성

(1) 뉴스 검색, 뉴스 홈, 뉴스박스

포털이 이용자들에게 뉴스서비스를 하는 방식은 크

게 두 가지, 자체 뉴스게시공간을 활용하는 방식과 검색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자체 뉴스게시공간을 통한 뉴스서비스

포털의 자체 뉴스게시공간으로는 ‘뉴스 홈’과 ‘뉴스박스’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뉴스 홈이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속보 등 각 분야별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선별하여 포털 자체적으로 게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포털들이라면 예외 없이 이 뉴스 홈을 설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 ‘뉴스박스’의 예



〈그림 2〉 ‘뉴스 홈’의 예



11)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네이버-주식회사 엔에이치엔, 다음-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버-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야후-야후코리아 유한회사, 파란-케이이티하이텔 주식회사, 드림위즈-주식회사 드림위즈, 구글-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천리안-주식회사 테이콤멀티미디어인터넛.

12) 업계의 반발이 컸던 이유 중의 하나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구글”을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에서 제외할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과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과 성격은 전혀 다르다. 인터넷언론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도 자동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뉴스캐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포털의 핵심적인 뉴스게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뉴스박스’에 어떤 기사를 게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포털사의 권한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뉴스캐스트’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편집권한을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로 이전했다고 한다.

간이면서도 뉴스 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개 뉴스박스는 각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중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은 위치, 즉 상단부 정중앙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게시되는 뉴스의 양만 놓고 보면 뉴스 홈에는 수십 건 이상의 기사도 충분히 올릴 수 있지만 뉴스박스에 게시될 수 있는 기사의 양이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주목도 측면에서 뉴스 홈은 뉴스박스에 비할 바 아니다.

거의 모든 포털들이 뉴스 홈을 갖추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뉴스박스에 는 예외가 존재한다. ‘구글(Google)’이나 ‘빙(Bing)’과 같은 일부 외국계 포털의 초기화면에는 뉴스박스가 없다. 뉴스박스 외에도 검색창을 제외하고는 별 다른 메뉴가 없다는 것을 이들 포털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림 3〉 뉴스박스 없는 포털의 예



〈그림 4〉 네이버 뉴스캐스트



이들 두 개 포털 외에는 대체로 뉴스박스를 두고 있으나 뉴스박스의 운영방식은 각 포털사마다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네이버의 ‘뉴스캐스트’다. 네이버에서 ‘뉴스캐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포털의 핵심적인 뉴스게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뉴스박스’에 어떤 기사를 게시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해당 포털사의 권한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뉴스캐스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뉴스박스에 대한 편집권한을 언론사와 이용자들에게로 이전했다고 한다.¹³⁾ 네이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몇 개 언론사의 기사만 뉴스박스에 노출되도록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동시에 이용자에 의해 선택된 언론사

13) 2006. 11. 15.자 미디어오늘 4면 ‘네이버, 12월 뉴스개편안 시행’.

는 자신들이 생산한 수많은 기사 중 어떤 기사를 네이버 뉴스박스에 올릴 것이며, 그 제목은 또 어떻게 달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나) 검색 기능을 통한 뉴스서비스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시작된 시점은 2000년도를 전후해서였다. 당시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큰 기대감이 없었다고 한다.¹⁴⁾ 그래서 뉴스의 선택과 배열이라는 편집행위 없이 뉴스 리스트만을 제공하는 단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포털은 이용자들이 검색창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 검색을 실시하면 관련 기사나 글들을 찾아 목록 형식으로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러면 이용자는 검색결과 중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글이 있는지 확인하여 클릭하게 되며, 이용자는 해당 기사나 콘텐츠가 속한 사이트로 이동하여 글을 읽을 수 있다. 이것은 포털이 말 그대로 ‘관문’의 역할만을 하는 것으로 포털이 발생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뉴스서비스의 방식이다. 현재 ‘구글’과 같은 경우가 이러한 전통적인 뉴스서비스 방식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방식의 특징으로는 뉴스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포털 입장에서 자체 뉴스게시공간을 통한 뉴스서비스가 ‘보이는 기사’, ‘능동적 기사’ 라면 검색 기능을 통한 뉴스서비스는 ‘보여주는 기사’, ‘수동적 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링크, 아웃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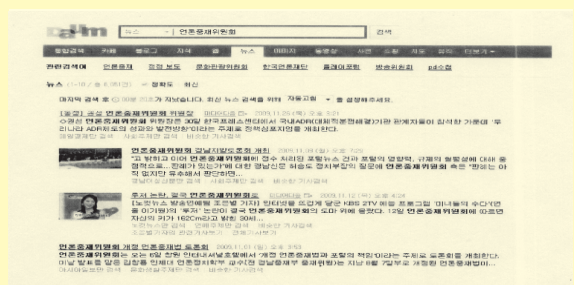
포털의 뉴스서비스는 다시 그 연결 방식에 따라 인링크 방식과 아웃링크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링크

란 포털이 기사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포털 자체 서버에 해당 기사가 저장되어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즉, 포털의 자체 서버에 해당 기사가 저장되어 있다면 인링크 방식에 의한 뉴스서비스가 가능하지만 자체 서버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기사는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연결만 가능하다. 물론, 포털 자체 서버에 저장된 기사라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제 네이버, 다음에서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검색 결과로 나온 기사 중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하여 기사를 열람하게 되지만, 해당 기사 상단 혹은 하단에 ‘네이버’ 혹은 ‘미디어다음’이라는 표시를 클릭하면 인링크 방식으로 같은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5〉 인링크와 아웃링크 동시 가능 방식(1)



〈그림 6〉 인링크와 아웃링크 동시 가능 방식(2)



14) 양삼승,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 통권 94호, p. 28.

가치중립적 나열, 인위적인 편집의 배제 등이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거로서는 일응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포털에 의한 피해 확산의 방지에 있다.

해당 기사가 인링크 방식에 의한 것인지,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할 실익은 다음과 같다. 인링크 기사의 경우에는 포털사업자가 해당 기사에 대해 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기사에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달 수도 있고 기사본문 내용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다. 또한 기사 하단에 정정보도문, 반론보도문을 게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웃링크 기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표시의무, 정정보도의무, 수정의무 등의 이행이 불가능하다. 아웃링크 기사는 해당 포털의 서버가 아닌, 다른 언론사가 운영 및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며 포털은 단지 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기사로 이용자를 연결시켜줄 뿐이다.

〈표 3〉 각 포털사들의 뉴스서비스 방식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 후	구글
뉴스홈	○	○	○	○	○
뉴스박스	○	○	○	○	×
인링크	○	○	○	○	×
아웃링크	○	○	○	×	○

다. 업계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다양한 뉴스서비스 방식 중 ‘뉴스 검색결과’와 ‘아웃링크에 의한 뉴스서비스’에 대해 포털 측은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검색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언론기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소재하는 모든 정보를 검색하여 이 중 특정한 검색어를 포함한 문서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다¹⁵⁾”

“통상적인 포털의 경우 언론사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받아 자신의 DB에 저장하고 편집하여 이를 게시한다. 그러나 검색로봇이 각 언론사의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기계적인 알고리즘에 따라 가장 많은 이용자들이 클릭한 뉴스를 수집하여 그 클릭의 양이 많은 순서에 따라 인위적인 편집 없이 기계적으로 배열하여 해당 언론사의 웹사이트에서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링크만을 제공

15) 2009. 10. 28. 구글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낸 협조 요청서.

하고 있다”

가치중립적 나열, 인위적인 편집의 배제 등이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거로서는 일응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은 포털에 의한 피해 확산의 방지에 있다. 수많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관문으로 활용하는 포털은 그 자체의 성격으로 인해 그것이 언론보도가 되었든, 검색서비스가 되었든 피해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범위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정정보도청구 등을 허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색서비스라든가, 뉴스제공 내지는 매개행위가 언론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공 혹은 매개의 대상이 사회적 공신력이 높은 언론의 기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털의 뉴스서비스 행위가 언론행위로서의 성질을 띠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점까지 감안하여 입법자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법적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실무에의 적용

이에 따라 현재 실무는 개정 언론중재법에서 말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는 그것이 검색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 뉴스게시공간에 올려진 기사든지 불문하고 일단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색에 의한 결과 중에서 뉴스

카테고리가 아닌 그 밖의 항목에 노출된 기사나 그와 유사한 형식의 글에 대해서까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블로그나 카페, 웹문서 항목에 있는 기사에 관해서까지 “인터넷뉴스서비스”로 규율하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외연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 포털의 뉴스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서 책임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인링크 방식에 의한 기사는 아웃링크 방식에 의한 기사에 비해서 포털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 자체 뉴스게시공간의 기사로 인한 책임은 검색 기사에 비해 그 정도가 무거울 것이다.

3. 쟁점 2: 포털의 자체 생산 기사는 인터넷뉴스 서비스인가?

가. 문제의 제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포털들은 자체 기사를 제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의 경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두고 자체 기사를 생산했지만 해당 사업을 접은 지 오래다.¹⁶⁾ 이런 상황에서 이제적으로 포털사이트 ‘야후’에서는 「송지현의 사람IN」이라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포털의 자체 제작 기사 혹은 콘텐츠를 개정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다.¹⁷⁾

16) 대신, 다음은 현재 ‘블로거 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블로거 기자단에 대해 일부에서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어 둔다.

17) 2009서울조정413; 이 사건은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가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해당 사건의 심리를 담당 한 서울제6중재부에서는 결국, 야후의 자체 제작 콘텐츠는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을 담당한 서울제6중재부는 포털 자체 제작 콘텐츠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 견해의 대립

포털의 자체 생산 기사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다른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규제하게 된 마당에 불법성의 측면에서 훨씬 심각하다고도 할 수 있는 자체 생산 기사를 법문에 얹매어 규제하지 않는다면 법적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포털에 의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개정 언론중재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법문의 해석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울지라도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극적인 법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정설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정의 규정상 포털이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언론의 기사’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개정 언론중재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언론의 범위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으로 제한하고 있다.¹⁸⁾ 개정 언론중재법에 의해 정정보도 등의 의무를 지게 된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이러한 언론의 범위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할 때 언론의 기사와 기타 언론 아닌 매체의 기사를 엄격히 구분하여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라는 것이 부정설의 주장이다.

다. 중재부의 판단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던 해당 사건(2009서울조정413)을 담당한 서울제6중재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첫째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포털업체는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활동과 관련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지위를 얻는다.

둘째로, 해당 사건의 조정신청 대상은 언론의 기사가 아니라 포털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인터뷰 영상으로서 관계 규정의 해석상 반론보도청구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8)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언론에 대한 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그간 신문법 개정에 따라 정기간행물이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나뉘어진 점 외에는 언론의 범위에 아무 변화가 없다.

셋째로, 개정 언론중재법 제17조의2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 조항에 의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에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 역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은 다른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라. 사건에 따른 정리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포털의 책임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포털 책임론과는 별개로, 그 법적 지위는 여전히 언론이 아니다. 입법자의 시각은 포털을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 내지는 전파자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포털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사 생산자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기사의 전달자로서 그 피해의 범위를 확대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다면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의 성격 또한 명확해진다. 그것은 언론의 기사가 아니다.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의 기사와 포털의 자체 제작 콘텐츠 사이에는 신뢰도라든가, 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시각이었을 것이다.

4. 쟁점 3: 포털의 손해배상책임 및 그 범위

가. 현재까지의 상황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11월 30일까지 포털을 상대로 총 43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있었으나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취하로 종결되었고, 3건이 조정성립되었으나 이들 역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지는 않았다.¹⁹⁾ 포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결과가 미흡한 것과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피해자들의 의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²⁰⁾ 또, 올 4월 19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바 있는 관련 판결²¹⁾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인터넷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보도매체가 작성·보관하는 기사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의 검색·접근에 관한 청구 역할을 넘어서서 보도매체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신의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보관하면서 스스로 그 기사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고 그 게재된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달리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보도매체의 특정한 명예훼손적 기사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전파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사업자는 명예훼손적 기사를 보도한 보도매체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 판결에 따르면, 포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을 수 있

19) 2009서울조정516~518 사건이 이에 해당되는데, 정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당사자 간에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포괄적 합의가 성립되었다.

20) 김창룡, 개정 언론중재법과 포털의 책임, 언론중재위원회 경남지방토론회 주제논문집, 2009, p. 5.; 논문에서 김창룡 교수가 지적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 포털이 기사만 삭제해줘도 만족하고 사건을 취하였다.

21) 대법원 2009. 4. 19. 선고 2008다53812 판결.

포털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포털의 특수한 사정, 즉 표시의무 이행 여부, 이행 방식의 차이, 검색결과에서의 배제 여부 및 해당 기사가 자체 뉴스게시 공간에 올라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는 경우는 언론사로부터 기사를 전송받아 자체 서버에 저장, 보관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 기사를 포털이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한 때로 제한된다. 대법원이 제시한 이런 엄격한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까지 접수된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사건들²²⁾은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포털의 손해배상책임범위

그러나 설령 대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접수된다 하더라도 포털의 손해배상책임범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는다. 즉, 매체에 따라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되는 위원회 절차²³⁾ 속에서 각각의 포털사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처음부터 독립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²⁴⁾ 이것은 일용 기사 제공언론사와 포털의 책임관계가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민법상의 법리와 다소 상충되는 듯한 모습이다.

현재 실무에서는 포털 사건이 접수되면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사건의 심리를 같은 날짜로 잡되, 기사제공언론사 사건부터 먼저 심리하고 그 후에 다수의 포털 사건을 병행심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 방식은 손해배상에 관한 주문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사제공언론사와 포털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한다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총액을 산정한 다음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신청인들 모두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간명할 수 있다. 각각의 언론사 내지는 포털사업자 간 책임 분담의 문제는 당사자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면 되고 이 단계까지 중재부가 개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사제공언론

22) 현재까지 손해배상이 청구된 해당 기사들은 모두 검색결과로 노출된 것들일 뿐, 자체 뉴스게시공간에 선별하여 올린 것이 아니었다. 2008다53812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뉴스서비스는 '단순히 보도매체의 기사에 대한 검색·접근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23)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언론중재법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소의 객관적 병합은 규정되어 있으나 주관적 병합에 대한 언급이 없다. 조정 실무상으로도 다수의 언론사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고 있지 않다. 조정절차의 성격상, 동일한 사안이라도 각 언론사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매체별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4) 이상원, 앞의 논문, p. 21.; 이 논문에서도 중재부에서 손해배상을 처리할 때 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제공 언론사의 고의, 과실 개입 여부, 양자 사이의 계약관계 등 제반 사정을 따져 책임범위를 달리하도록 업무처리할 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다.

사와 각 포털사들을 별도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지금의 방식하에서는 조정단계에서 각 매체별로 책임의 범위를 산정하여 배상액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각 포털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부진정연대책임임을 전제로 산정했을 경우 산출 가능한 금액 이상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기울여야 한다. 각 포털사마다 독립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우연한 사정이 배상금액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포털의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포털의 특수한 사정들, 즉 표시의무 이행 여부라든가, 이행 방식의 차이, 검색 결과에서의 배제 여부 및 해당 기사가 자체 뉴스게시공간에 올라간 것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III. 언론사닷컴²⁵⁾ 관련 실무상 쟁점

1. 개정 언론중재법상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법률용어가 아닌 것처럼 “언론사닷컴” 역시 법률용어가 아니다. 언론사닷컴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적 간행물이라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었을 당시 언론중재법에는 언론사닷컴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가. 구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 관련 규정

구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에서는 “인터넷신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제2조 10.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²⁶⁾

위와 같은 형식의 조문에 의해 인터넷신문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은 언론중재법 제2조 제10호가 아닌, 신문법 제2조 제2호라 할 수 있다.

제2조 2.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과 지속성을 갖춘 전자적 간행물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개념요소라 할 수 있는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과 “지속성”에 관해 신문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대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구 신문법 시행령에서는 이들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25) 언론사닷컴이란, 방송사나 신문사, 뉴스통신사와 같은 기존 오프라인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온라인을 기반으로 시작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과 같은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종속형 인터넷신문’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26) 언론중재법의 계속되는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법에는 많은 위임규정 내지는 차용규정이 존재한다.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등과 같은 핵심 개념 모두 언론중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의 개념은 방송법에 의해, 일간지라든가 인터넷신문의 개념은 신문법에 의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규정된다. 인터넷뉴스서비스에 관해서는 이례적으로 언론중재법이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신문에 관해서는 신문법에서의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개정 신문법 시행령으로 기존 신문사 등이 별도로 설립한 계열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사닷컴들도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방송사닷컴, 비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먼저,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으로서 취재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며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일 것을 요구했다. 또, 지속성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가 게재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구 신문법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인터넷매체들은 많지 않았다. 소위 ‘독립형 인터넷신문’이라 일컬어지는 매체들만이 인터넷신문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언론사닷컴과 포털들은 모두 인터넷신문의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좁히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건은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 그 중에서도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이 자체 생산 기사여야 한다는 요건이었다.

나. 개정 언론중재법에서의 인터넷신문 관련 규정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독자적 기사 생산능력 요건이 이번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폭 완화되었다.

신문법 시행령 제2조 ② 제1항 제1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자가 생산하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가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매체의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를 미달 하더라도 인터넷신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신문의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종전에는 인터넷신문으로 보기 어려웠던 언론사닷컴들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다. 개정 인터넷신문의 문제점

문제는 이 독자성 요건 완화의 적용대상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개정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기사생산자는 신문사업자이거나 잡지 또는 기타 간행물 발행하는 자, 그리고 뉴스통신사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즉, ‘방송사업자’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매체가 빠진 것이다.

다음으로, 기사생산자의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일 때만 독자성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서 차용해온 개념으로서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회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독자성 완화 요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닷컴은 반드시 독립된 법인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정리하자면, 기존 신문사나 잡지사, 뉴스통신사가 별도로 설립한 계열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언론사닷컴들만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의해 인터넷신문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방송사닷컴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비독립 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문제로 연결된다.

2. 인터넷신문의 범위에서 제외된

언론사닷컴들의 문제

가. 쟁점 1: 방송사닷컴의 법적 지위

현재 우리나라 공중파 3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케이블 방송사 등 대부분의 방송사 홈페이지는 인쇄매체들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공중파나 케이블을 통해 이미 방영된 뉴스나 프로그램이 이들 방송사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서비스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신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방송사업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독자성 완화에서도 배제되었다.

방송사닷컴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다. 하나는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주간 게재 기사건수의 30%를 초과함으로써 인터넷신문의 본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요건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방송사닷컴은 일반 언론사닷컴들보다도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터넷신문의 본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방송사닷컴의 주된 기능과 역할은 방송사가 제작, 생산한 뉴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정 언론중재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개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운영 주체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사닷컴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될 것을 전제로 이들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나. 쟁점 2: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의 법적 지위

중앙일간지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언론사닷컴들이 기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
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규
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법
적용의 상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함이다.

존 언론사의 출자로 설립된 별도 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일간지 소속의 일부 언론사닷컴 및 지방지나 특수지들에서 운영하는 상당수의 언론사닷컴은 기존 언론사 내의 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앙일간에 속하는 '문화일보' 라든가 '내일신문'의 경우에는 별도 법인이 아닌 해당 언론사 내 온라인팀에서 언론사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이들 매체들이 개정 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독자성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독자성 완화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언론사의 계열 회사, 즉 독립법인 형태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 역시 언론중재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크게 두 가지다. 방송사닷컴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신문의 본래 요건을 충족하든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법 적용에 있어서의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하는데 기존 언론사 중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된 곳이 거의 없다. 해당 닷컴사를 운영하기 위해 기존 언론사의 출자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예가 많지만, 언론사 자체가 직접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경우는 흔치 않다.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기 전에는 이들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인터넷신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다. 인터넷신문이 되려면 주간 게재 기사건수 중 자체 생산 기사의 비율이 30%을 넘어야 하고 상시 고용된 취재 및 편집 인력이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주간 단위로 기사가 계속 해서 올라와야 한다. 그런데 과연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이 이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기존 언론사업자에게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즉, 기존 언론사업자를 신문사업자(혹은 간행물사업자)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해당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기사는 자체 생산 기사가 될 것이고, 해당 사업자에 상시 고용된 취재 및 편집 인력의 숫자 역시 문제되지 않는다.

사실 이러한 법 해석에 다소 무리한 감이 없지 않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부터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에 인터넷신문 규정을 적용했어야 했다. 당시 소관 관청이었던 구 문화관광부에서는 해당 언론사들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도록 지도했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신문법 소정의 벌칙 규정²⁷⁾을 적용했어야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역시 이들 매체를 상대로 조정신청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고, 이들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조정심리를 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원칙적으로 취해지지 않았다.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나 문화관광부에서 인터넷신문의 요건에 관한 기존 규정을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게 되면 일관성 없는 조치로 여겨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기존 입장으로부터 선회하여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보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법 적용의 상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법 적용에 있어서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독립법인 형태의 언론사닷컴 역시 인터넷신문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 쟁점 3: 인터넷TV의 법적 지위

웹TV 혹은 인터넷TV는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 및 개인 사용자가 자체 제작한 콘텐츠를 웹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²⁸⁾ 흔히 곰TV, 판도라TV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들 매체에서 와이티엔이라든가, 일부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을 중계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웹TV는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개념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매체에 올

라오는 이용자들의 자체 제작 콘텐츠는 ‘언론의 기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로 보기 어렵다. 인터넷 TV가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하다. 개정 언론중재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주체가 부가통신사업자여야만 하므로 웹TV를 운영하는 해당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표 4〉 특수한 형태의 언론사닷컴 등의 법적 지위

매체의 유형	법적 지위
방송사닷컴	인터넷뉴스서비스
비독립법인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
인터넷 TV	인터넷뉴스서비스 (단, 기존 언론사의 뉴스 등을 서비스하는 경우에 국한됨. UCC 등 이용자 자체 제작 콘텐츠는 제외됨)

IV. 검토를 마치며: 입법적 제안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이후 꾸준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수단이었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법 개정의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관련 업체가 뉴스서비스 방식만 조금 변경해도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언론중재법 대상 매체들의 규정 방식이 몹시 폐쇄적인 데 있다고도 보

27) 구 신문법 제40조 제1호;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신문을 발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8) 백종호, 인터넷TV, 도대체 IPTV와 뭐가 다른거야?, 방송문화, 2009년 9월호, p. 48.

뉴스서비스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언론중재법상 매체 규정방식을 좀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아 향후 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다. 이러한 방식의 매체 규정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식의 매체들, 즉 신문이라든가, 방송, 뉴스통신에 관해서는 유효했고 비교적 법 적용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장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전통적인 매체와는 태생이 다른 포털, 언론사닷컴, 인터넷신문 등의 뉴미디어들에도 맞는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들 새로운 매체들은 앞으로도 경영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뉴스서비스 방식을 유연하게 바꿀 수도 있으며 심지어 뉴스서비스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을 심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업체의 입장에 따라 법이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만 보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언론중재법상 각 매체를 규정하는 방식을 좀 더 개방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언론중재법상 매체에 대한 규정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해 의견을 모아 향후 법 개정 시에 반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